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8 선고 2022가단89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2019. 5.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C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B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고양세무서장과 파주세무서장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는데, B의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2. 6.경 체납세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166,721,8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단위 :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비고
양도소득세	2019년	2019.02.28.	2019.07.16.	82,995,470	106,648,970	증여계약 이전 국세체납
종합소득세	2018년	2018.12.31.	2019.10.08.	10,155,000	12,820,610	
종합소득세	2018년	2018.12.31.	2019.10.10.	9,160,090	11,564,590	
양도소득세	2019년	2019.02.28.	2020.03.15.	29,132,930	35,687,650	
소 계				93,150,470	166,721,820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2019.06.30.	2019.10.25.	359,900	370,690	
종합소득세	2019년	2019.11.30.	2019.11.30.	10,000,000	12,550,000	
종합소득세	2019년	2019.11.30.	2020.03.17.	1,644,000	2,013,900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2019.06.30.	2019.10.02.	197,500,620	250,825,630	
합 계				340,948,010	432,482,040	

나. B의 콘도회원권 증여

(1) B는 2019. 5. 30. 별지 목록 기재 본인 소유의 C 주식회사 발행 D콘도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원권 명의변경 절차를 마쳤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아래표 기재와 같이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하여 80,170,053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193,150,47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가 액(원)	평가방법	비고
적극재산 (①)	[토지] 고양시 일산서구 E	19,602,000	기준시가	갑 5, 6
	[토지] 경기 연천군 F	1,109,053		
	[토지] 파주시 G	18,630,000		
	[토지] 파주시 H	30,521,000		
	이 사건 회원권	10,308,000	시가	갑 4
	소 계	80,170,053		
소극재산 (②)	이 사건 조세채무	93,150,470		
	근저당권부 채무	100,000,000	부채증명원	갑 7
	소 계	193,150,470		
증여계약 당시 순자산(③ = ① - ②)		- 112,980,417		
증여계약 (④)	이 사건 회원권 증여	- 10,308,000	시가	갑 4
채무초과 (③ - ④)		- 123,288,4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와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B에 대하여 1,595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회 걸쳐 합계 1,59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고, C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

별 지 목 록

- 회원권 발행법인 : C 주식회사
- 회원권 발행법인 사업장 : 서울 광진구 I, 13층 J호
- 시설물명 : D콘도
-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D콘도, 회원번호 : K의 회원권. 끝.

